

(특별회계)

-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 중동지구 용지보상 및 택지조성
- 상수도 확장 및 원수구입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신설

일반회계장별예산현황

(단위: 천원)

장 별	시제출 예산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계	26,132,115	982,424	26,122,115	
의회비	287,255	50,000	227,255	
일반행정비	3,575,928	631,710	2,944,218	
사회복지비	1,720,307	28,982	1,691,325	
산업경제비	326,619	23,000	303,619	
지역개발비	20,522,690	153,312	20,369,378	
문화예술진흥비	1,005,746	95,420	910,326	
민방위비	485,916		485,816	
지원및기타경비	-1,792,246	+982,424	-809,822	

특별회계별예산현황

(단위: 천원)

회 계 별	시제출 예산액	수 정 액		수정예산액	비고
		삭감액	예비비		
계	52,013,641	141,500	+141,500	52,013,641	
상수도사업	5,218,713	50,000	+50,000	5,218,713	
공영개발사업	36,020,000	82,500	+82,500	36,020,000	
하수도사업	10,774,928	9,000	+9,000	10,774,928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91. 5. 28.

나. 제안자: 부천시청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91.5.

29.상정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91.5.

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사유)

1. 부천시 직장근로자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을 도모하며;

2.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산업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설치한

3. 노동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1. 상용허가(안 제3조 각호)

2. 사용료(안 제3조 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제안설명자: 보건사회국장 김 동 언)

문) 노동복지회관이 운영권만 시에 있고 사실상 관리는 노동부라 하는데 답변은?

답)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국고보조 311,022천원과 시·도비 1,548,206천원등 총 1,859,228천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며 부천시의 공유재산이고 재산권자가 부천시청임.

문) 위탁관리(예식장, 식당 등), 요금선정방법, 구체적인 운영세칙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답) 현행, 지방제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식장은 관리인원을 충원 배치하여 직영을 하므로 사용자가 부담없이 사용토록 하겠으며 구내 식당은 위탁을 할 경우 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이용자에게 실익이 되도록, 위탁 계약시 질, 가격 등 계약 조건 등을 붙여 공개입찰 운영할 계획임.

문) 상담실의 상담역할자 임명과 대상에 대하여는?

답) 노동법등, 노사관계등의 상담은 전문적으로 노동부, 노총등에서 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은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기타 상담은 식견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 운영 하겠음.

문) 노동복지회관 사용요금을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하였는지?

답) 사용요금을 받는 부천시 공유재산 시설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등이 있으며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요금은 시민회관의 소공연장시설을 참고하고 시중 예식장의 요금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드레스, 폐백실 이용은 무료로 하고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을 근로자가 사용시는 일반 시민의 50%할인 이용토록 하였음.

문) 현 사용료 정수로 노동복지회관의 유지가 가능한지?

답) 노동복지회관은 수익사업(공기업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용조례(안)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공공시설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할수도 없고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주기 위하여, 또한 공공시설물을 보존관리 하기 위함.

문) 노동복지회관 관리를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참여가-가능한지?

답) 노동복지회관은 부천시의 공유재산이며 또한 중요행정 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의 보존관리 책임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문) 독서실 장소에 노동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을 배치하는지?

답)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에는 도서실이 아니고 근로자가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추후 근로자들이 필요한 서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전문서적, 교양서적을 확보할 계획임.

문) 식당 및 예식장을 직접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어떠한지?

답) 현행 법규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관리 인원을 충원 배치하여 직영을 하므로 사용자가 부담없이 사용토록 하겠으며, 구내식당은 위탁을 할 경우 계약서 질, 가격등 조건을 붙여 공개입찰하여 이용자에게 실익이 되도록 하겠음.

문) 노동복지회관 조례 제8조 4항의 내용중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 납입에 대한 기준은?

답)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료(대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신청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연, 행사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하여 수입금(입장, 관람료)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30/100을 시에 납부토록 한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서병만	탁아소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기존설치된 노동복지회관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은 회관건립 취지에 어긋남.
임근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기존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운영상의 인력문제 및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반대함.

나. 반대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없 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없 음

나. 수정이유

없 음

다. 수정주요골자

없 음

6. 조사결과

원안대로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탁아소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나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은 공간의 부족과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심사숙고 하여야함.

8. 기타필요한 사항

○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사항을 위하여 차기 임시회에서라도 심층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음.

9. 체계자구심사내용

없 음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91. 5. 30.

나. 제안자: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